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17. 11. .
발 의 자	김정곤의원 외 4명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곤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7. 11.

발 의 자 : 김정곤, 김인배, 박교상, 양진오, 정근수 의원
(5인)

1. 제안이유

자치법규 규제 개선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규정·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유사·중복된 위원회를 통합하여 업무추진의 능률과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에 근거 없는 보조금 지원 대상 삭제(안 제18조)

-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지원(법령위반 소지)

나. 유사·중복된 환경관련 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안 제20조)

- 녹색성장위원회, 화학물질 안전관리 → 환경정책위원회

다.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2조 ~ 제25조)

- 위원회 통합에 따른 위원회 기능 추가
-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화학물질관리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구미시”로, “관리, 보전함”을 “관리·보전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을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미래의 우리세대”를 “미래세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책 중 환경과 관련된 시책”을 “시책”으로 한다.

제4조제7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로, “보전 되어야”를 “보전되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항”을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환경정책위원회 등 설치)”를 “(환경정책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업무”를 “환경보전·화학물질 안전관리·녹색제품 구매촉진·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업무 등의”

로, “관계공무원 및 민간단체 등 전문가를 위촉,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할”을 “구미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환경업무 담당국장

2. 구미시의회의원

3. 환경보전·화학물질 안전·녹색제품 구매촉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4. 그 밖에 환경단체 등 환경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제21조제3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환경정책위원회”를 “위원회”로,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안전과장”을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정책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2조제7호(중전의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6.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 다음”을 “다음”으로, “해촉 할 수 있다”를 “해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제2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4조제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경우에 위원장의”를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5조제3항 중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26조 중 “환경정책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3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 중 “시행이”를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구미시(이하 “시”라 한다)</u> 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민의 권리·의무와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u>관리, 보전함</u>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환경정책기본법</u> 」에 따라 <u>구미시</u> ----- ----- ----- ----- ----- ----- ----- ----- -- <u>관리·보전함</u> ----- --.
제2조(기본이념) ① <u>시의 환경보전</u> 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u>미래의 우리세대</u> 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u>구미시(이하 “시”라 한다)</u> 의 환경보전은 <u>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u> ----- <u>미래세대</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의 모든 시책 중 환경과 관련된 시책</u> 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③ ----- <u>시책</u> ----- ----- ----- --.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4조(정의) -----

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환경 보전행위를 말한다.

제11조(환경보전계획)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③ ~ ⑤ (생 략)

제12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생 략)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보전 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③ (생 략)

제1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환경

--.

1. ~ 6. (현행과 같음)

7. -----이란 -----

--.

제11조(환경보전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 호-----
-- 보전되어야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

시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2. (생략)

3.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4. 환경감시활동 등 환경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항

5. ~ 9. (생략)

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등 이들이 조직하는 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20조(환경정책위원회 등 설치)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전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민간단체 등 전문가를 위촉,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1. · 2. (현행과 같음)

3. 공공폐수처리시설 -----

4. -----
----- 사업

5. ~ 9. (현행과 같음)

<삭제>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환경정책위원회 설치) --

----- 환경보전 · 화학물질 안전관리 · 녹색제품 구매촉진 ·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업무 등의 -- 구미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

제21조(구성) ① 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은 구미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학계, 시민단체,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환경정책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안전과장이 된다.

④ 환경정책위원회는 필요에 따

제2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환경업무 담당국장
2. 구미시의회의원
3. 환경보전·화학물질 안전·녹색제품 구매촉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4. 그 밖에 환경단체 등 환경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③ 위원회-----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과장--.

④ 위원회-----

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기능) 환경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생략)

<신설>

3.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신설>

<신설>

제2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22조(기능) 위원회-----

-.

1. 환경계획-----

--

2. (현행과 같음)

3.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4.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6.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제2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②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선출직 및 소속단체의 직을 상실한 경우

2. 타 부서로의 이동 및 전출한 경우

<신 설>

3. 4. (생략)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 다음 -----

----- 해촉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1. 2.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

제25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 분 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 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 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26조(시책반영) 시장은 환경정 책위원회의 심의, 건의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이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2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 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 ----- ----- 의결한다. 제26조(시책반영) ----- 위원회-- ----- ----- -----. 제27조의2(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시행규칙) ----- 시행 에 ----- -----.
--	--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57조(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 4. 생략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연순환·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

원회 및 시·군·구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